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13526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3. 8.

판결 선고2017. 4. 12.

주 문

1.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5. 9.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5. 9. 22. 접수 제13719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C와 피고 B 사이에 2015. 12.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85,637,239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2008. 12. 19.경 C가 수협중앙회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기간은 2008. 12. 19.부터 2009. 12. 18.까지, 보증금액은 5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위 약정은 수회 조건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12. 2. 보증기간은 2016. 12. 9.까지, 보증금액은 47,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011. 9. 9.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기간 2011. 9. 9.부터 2012. 9. 7.까지, 보증금액은 9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위 약정은 그 조건이 수회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8. 26. 보증기간이 2016. 9. 2.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C는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C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C는 2016. 1. 26. 폐업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C를 대위하여 2016. 3. 23. 기업은행에게 90,794,727원(그 중 원금은 90,000,000원), 2016. 4. 4. 수협중앙회에게 47,909,148원(그 중 원금은 47,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C도 피고로 삼아 수협중앙회와 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돈에서 C로부터 회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137,461,965원, 확정손해금 340원, 및 대지급금

713,707원 총합계 138,176,012원과 그 지연손해금(위 돈 중 90,071,277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47,390,688원에 대하여는 2016. 4.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C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인낙하였다. 마. C는 2015. 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11. 조카인 피고 A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 A에게 매매대금 1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9. 22. 피고 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3719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C는 2015. 12. 3.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5. 12. 8.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4788호로 각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사.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6. 11. 23. 실제 배당액 145,637,239원 중 60,000,000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유아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나머지 85,637,239원을 피고 B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95호로 피고 B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 위 신청에 따른 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85,637,239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에는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 당시, C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을 연체하고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실제로 C는 2016. 1. 26.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고, 그 후 원고가 C의 수협중앙회와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사후구상금 채권도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채무초과 여부 등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나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협은행 WM사업부장 및 IBK기업은행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 총액은 160,079,665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의 가액 9,536,185원(2015. 5. 29. 공시지가 기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137,180,600원(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수협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 12,675,125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 137,500,000원(원금만 계산한 것임)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6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등 합계 197,5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160,079,665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197,500,000원 이상이므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은 C가 38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C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한편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데, 그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09. 9. 5. E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2016. 6. 2. F에게 3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C가 E, F에 대하여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상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다거나 채무자인 E, F이 변제자력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각 대여금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A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A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C에 대하여 39,3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1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 받았는데, 위 지분은 당시 C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C에게 2010. 2. 19.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39,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A이 위 돈을 대여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위 39,3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사 피고 A이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위 지분을 대물변제받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C의 조카로서 C와 수회 금전거래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B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00년경 C를 알게 되어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C에게 사업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2014. 12.경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5. 6. 11. C로부터 '대형마트에 수산물 납품하기로 F과 합의가 되어 있으니 추가로 3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0,000원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면서 C로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수산물 공급의 지분권을 이전받기로 약속받았음에도, C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지분권 이전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자, C가 이를 합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을 뿐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2015. 1. 26. C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C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 B이 2015. 6. 11. G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30,000,000원이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2014. 12.경 C에게 수회에 걸쳐 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①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B은 C와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평소 금전 거래를 해 온 점, ② 2014년부터 2015년에 차용한 48,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이 악의라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피고 B은 그 경매절차에서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현재 그 배당금 85,637,239원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수익자인 피고 B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85,637,239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문성

별지